

[일련번호 : 1]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회계연도 초과 계약에 대한 사고이월 미조치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◇◇과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◇◇과는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도별 세출예산을 편성·집행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회계법」 제29조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법령 등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이며, 계약에 따른 원인행위 후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변경될 시에는 원인행위 금액을 정정한 후 결의 등의 지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
「지방재정법」 제6조(회계연도), 제7조(회계연도 독립의 원칙) 및 「지방회계법」 제6조(회계연도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,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,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과 회계연도를 경과한 이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. 다만,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

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◇◇과는 계약기간이 당해 회계연도를 넘겨 다음 회계연도로 연속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총액을 계약(원인행위)한 후, 지출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조치를 하지 않고, 다음연도 예산으로 해당 금액을 지출하였다.

[표] 세부사업 및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내역

적 요	계약기간	계약금액 (원인행위액)	지적사항
2022년 ***** 업무용 차량 임차계약	2022. 3. 28. ~ 2023. 3. 27.	11,972,400원 (12개월)	2022년 예산으로 전액 원인행위 후 사고이월 미조치 - '22년 원인행위액 일부 불용(2,693,790원) - '23년 예산으로 '22년 계약 건 지출(2,693,790원) (지출공문 제목은 사고이월 재품의 이나, 실제는 사고이월되지 않은 '23년 당해예산이었음)

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◇◇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 5. 조치할 사항

◇◇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